

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관련
번 호	3251

제안일자 : 2025. 12. 17.

제 안 자 :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의 체계상 조문의 위치를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8조의2(운영성과 공개)를 제6조의2로 수정함. (안 제8조의2)

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의2를 제6조의2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운영성과 공개)</u> <u>개) 시장은 예약시스</u> <u>템의 운영성과 및 부</u> <u>정 이용 방지 조치</u> <u>결과, 시민 불편 처</u> <u>리 현황 등을 공개할</u> <u>수 있다.</u>	<u>제6조의2(운영성과 공</u> <u>개)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

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이용
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절차의 간소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
다.

제4조 중 “예약시스템 이용”을 “시민 불편 및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
한 예약시스템 이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예약시스템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부정 이용 방지 기능 관리 및 개선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운영성과 공개)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운영성과 및 부정 이용 방지
조치 결과, 시민 불편 처리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책무) ①·②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조(책무) ①·②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절차의 간소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
제4조(실태조사)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<u>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	제4조(실태조사) ----- ----- -- <u>시민 불편 및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예약시스템 이용</u> ----- --.
제6조(사업추진)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사업추진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예약시스템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부정 이용 방지 기능 관리 및 개선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제6조의2(운영성과 공개) 시장은 <u>예약시스템의 운영성과 및 부정 이용 방지 조치 결과, 시민 불편 처리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.</u>